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하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1999. 2. 8. 「하천법」 전부개정에서 ‘수익자부담금’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폐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하천법」 제58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가 당초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